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에 국제노동기구(ILO)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고,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·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(6급 7명, 7급 8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00. ~ 2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622”를 “62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16”을 “617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592”를 “593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7,046”을 “7,06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,045”를 “7,060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7,016”을 “7,03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(제3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22</u>	<u>623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616</u>	<u>617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592</u>	<u>593</u>	+1
•	•	•	

[별표 3]

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,046</u>	<u>7,061</u>	+15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7,045</u>	<u>7,060</u>	+15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7,016</u>	<u>7,031</u>	+15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2